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V): 금융 및 외화 관리

황동언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남북한은 상호 경제 교류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경험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는 등 남북 경험 활성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북한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고, 동시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경제 분야에서 개혁·개방의 기반이 다소 마련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11월 금강산 관광 사업이 성사되는 등 남북한 경제 협력은 점차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즉, 단순 교역에서 더 발전하여 위탁 가공 및 투자 협력 사업으로 경제 협력의 양적·질적 성장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때를 즈음하여 본지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불완전한 형태이긴 하지만, 상당수 제정되어 있는 북한의 외국 투자 관련 법안을 분석하고 사전에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애매모호한 법안 내용을 명확히 하여, 향후 경제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장애물들을 미리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는 것은 향후 남북한 경제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의 내용을 ① 기업의 설립 및 출자제도, ② 노무 관리, ③ 경영 활동, ④ 토지 관리, ⑤ 금융 및 외화 관리, ⑥ 조세, ⑦ 분쟁처리 및 청산제도 등 크게 일곱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다섯번째인 금융 및 외화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반적으로 자체 자금력이 부족하고 금융 부문에 대한 통제가 강한 사회주의 국가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 대상국 내에서의 자금 조달과 금융·외화 관리 상의 독자성 여부는 투자 성공의 중

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투자 대상국의 안정성이 낮은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측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금융

외국인 투자의 경우,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8조에는 장려 부문에 투자하는 경우 은행 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 북한 내에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합영법에서는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합영법 시행규정 제107조). 그런데 특이한 점은 구합영법 시행 세칙에서는 경영 활동에서 모자라는 외화를 우리나라 은행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제76조)고 되어 있어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한편, 외국인기업법에서는 공화국의 은행 또는 다른 나라의 금융 기관으로부터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50조). 그리고 외화관리법 시행규정에서도 경영 활동에 필요한 외화 자금을 공화국의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정 제38조).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북한의 외화 상황으로 보아 북한 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규정에서 다른 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외화 관리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계획 경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가가 외화의 수급을 계획에 의해 장악·관리하는 외화집중관리제도를 실시한다(외화관리법 제4조). 즉,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북한에서도 외화집중관리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그 주요 수단으로는 ① 외화 현금의 유통 금지(외화관리법 제9조), ② 외화 거래·저금·예금·저당 등의 외국환 관련 거래 은행의 제한(외화관리법 제11조), ③ 외화 관리 기관에 의한 환율 결정(외화관리법 제6조), ④ 외화 관리 기관의 결제 통화 지정(외화관리법 제12조) 등을 들고 있다.

외화의 일반 규정

북한에서 외화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외화관리법인데, 외화관리법은 크게 일반 규

〈표 1〉 외화의 구분

구분	종류
태환성 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의 시기와 장소에서 타국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외국 화폐(은행권, 보조 화폐) · 외화 유가 증권(외화로 표시된 국가채권, 지방채권, 회사채권, 출자증권, 주권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 · 외화 지불 수단(외화로 표시된 수형 · 행표 · 여행신용장 · 송금증서 · 지불지시서) · 기타 외화 자금(전환성 외화 계좌와 국제 결제 계산 단위로 표시된 계좌의 금액) · 귀금속
불태환성 외화	· 임의의 시기와 장소에서 다른 나라의 돈과 바꿀 수 없는 민족화폐와 민족화폐로 표시된 계좌의 금액

자료: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4조.

정 · 외화 이용 · 외화 반출입 · 제재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일반 규정에서는 외화의 개념, 외화 관리 기관의 역할, 외화의 유통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외화는 크게 태환성 외화와 불

태환성 외화로 구분할 수 있다.¹⁾ 이러한 외화의 관리는 외화 관리 기관이 하며, 이외에 외국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은행으로 무역은행이 있다.²⁾ 무역은행 외의 다른 은행도 외화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 업무를 할

〈표 2〉 외화 관련 기관

외화 관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의 수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그 지출을 통제 · 외화 관리와 관련 법규법 집행의 바업론적 지시를 만들 · 외국환 은행과 외국 투자 은행의 외국환 업무 범위를 승인하며 북한원에 대한 외국환의 기준 시세를 결정
무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 업무 전문 은행 · 외화 거래, 대외 결제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북한원에 대한 외화 현금 교화 시세와 외국환의 결제 시세, 대외 결제 취급 수수료율, 외화의 예금 · 저금 · 대부 이자율 결정 · 정부간 체결된 무역 및 지불에 관련 협정에 따르는 은행들 사이의 지불협정

자료: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5~8조.

1) 참고로 북한의 화폐는 크게 일반 화폐와 특수 화폐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화폐는 지폐 5 종(1원, 5원, 10원, 50원, 100원)과 주화 5 종(1전, 5전, 10전, 50전, 1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 화폐인 외화와 바꾼 돈표는 8 종(1전, 5전, 10전, 50전, 1원, 5원, 10원, 50원)이 있는데, 원래 조선중앙은행권으로 발행되었으나 1988년 9월부터는 무역은행권으로 발행되고 있다. '외화와 바꾼 돈표'는 두 종류가 있는데, 푸른색은 태환성 외화, 붉은색은 불태환성 외화와 바꾼돈을 나타낸다. 여기서 태환성 외화는 달러 · 마르크 · 프랑 등 서방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10여 개의 화폐들을 말하며, 루블화 등 구사회주의권이나 남미 · 아프리카 화폐는 불태환성 화폐로 간주한다.

2) 현재 무역은행이 환거래 계획을 체결한 외국계 은행으로는 일본의 三井, 住友, 富士, 三菱 등 18 개 은행과 영국의 Lloyds, Standard Chartered, 독일의 Deutsche, Commerz, 프랑스의 BNP, Credit Lyonnais, 스위스의 SBC, UBS,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Creditanstalt Bankverein, Girozentrale Vienna 등이 있다.

수 있다(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7조).³⁾

한편, 북한 내에서는 외화 현금을 유통시킬 수 없다. 그리고 외화에 의한 결제는 외화와 바꾼 북한원 계좌를 통해 한다(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10조). 북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상속할 수 있다(외화관리법 제9조).⁴⁾

외화의 이용

외화는 무역 거래·무역외 거래·자본 거래·외화 매매 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 이때의 자금 결제는 거래 은행에 개설된 북한원 또는 외화원, 외화 계좌를 통해 무현금으로 한다(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16조).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계좌의 잔고에 대

해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점이다(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16조).

이외에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화와 바꾼 북한원 또는 외화를 은행에 외화원 또는 외화 예금 계좌를 두고 예금할 수 있다. 이때 은행은 외화의 예금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며 정해진 이자를 지급한다(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22조).

북한의 기관·기업소는 벌어들인 외화를 해당 거래 은행에 입금시켜야 하며, 외화 관리 기관의 승인없이 외화를 타국에 있는 은행에 예금하거나 기관·회사·기업체 기타 경제 조직 및 개인에게 맡겨 둘 수 없다(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26조). 국가로부터 외화를 받아쓰는 기관·기업소는 외화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화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

〈표 3〉 자금 결제의 유형

북한원 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북한원 · 이 돈은 외화로 전환 불가
외화원 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성 외화를 북한원으로 전환한 돈을 입금 · 임의의 시기에 요구하는 외화로 전환 가능
외화 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외화를 화폐별로 입금 가능 · 임의의 시기에 요구하는 외화와 바꾼 북한원 또는 외화로 전환 가능

자료: 외화관리법 제16조.

3) 이러한 은행으로는 금강은행과 대성은행 등이 있다. 금강은행은 무역 업무 결제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주로 기계·금속·광물·화학 제품 등의 수출입과 조선봉화무역상사 등의 대외 결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성은행은 대성무역·조선만경무역상사 등의 대외 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귀금속 거래 및 일반 외국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4) 시행규정 제13조에는 합법적인 외화의 예로 생산 및 봉사 활동 등을 하여 얻은 외화와 노동 보수로 얻은 외화, 타국으로부터 송금해왔거나 가지고 온 외화 등을 들고 있다.

〈표 4〉 개인의 외화 보유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국에서 송금해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 현금의 보유 및 북한 은행에로의 판매 · 저금 가능 · 북한 출국 외국인은 외화와 바꾼 북한원을 다시 외화로 교환 가능
북한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와 바꾼 북한원으로 2,000 원에 해당하는 외화만을 현금으로 보유 가능 · 이 이상의 외화 현금은 저금 또는 외화와 바꾼 북한원으로 보유해야 함 · 송금되었거나 저금한 외화를 외화 현금으로 출금할 수 없음

자료: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42~44조.

나 자체의 외화 수입 계획이 있는 기관·기업소는 외화 관리 기관의 승인없이 자기가 번 외화 범위 안에서 해당 거래 은행을 통해 서만 외화를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이나 북한 주민은 일정 범위 내에서 외화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한편, 개인들 사이에는 외화와 바꾼 북한원을 매매 할 수 있으며, 기관·기업소는 외화와 바꾼 북한원을 쓸 수 없다(외화관리법 제45조).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화와 관련하여 북한 외화 관리 기관의 엄격한 관리 하에 놓여 있다. 먼저 외국인 투자 기업은 북한 내에 계좌를 둔 은행을 통하여 타국에 대금을 청구 해야 한다. 또 청구한 외화를 타국에 있는 은행에 넣으려면 외화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37조). 타국에 있는 은행에 계좌를 둔 외국인 투자 기업은 분기마다 분기가 끝난 다음날부터 30일 내에 그 계좌에서의 외화 수입·지출과 관련한 문건을 외화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40조).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각종 보고서를 외화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화의 반출입

북한의 외화관리법에 따르면, 외화 현금과 외화 유가증권·귀금속은 제한없이 반입이 가능하나, 반출의 경우 몇 가지 제한이 따른다. 첫째, 외화 현금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

〈표 5〉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화 관련 제출 자료

구분	종류
다음해 2월내	·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연간외화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외화수지보고표
전해 11월내	· 다음해 외화수지예산서
다음 분기 첫달내	· 분기외화재정상태표, 외화수지보고표

교환 증명 문건이나 입국시 세관신고서 상의 금액 범위 내에서만 반출이 가능하다(외화관리법 제23조). 둘째, 외화 유가증권은 외화 관리 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이 가능하다(외화관리법 제24조).⁵⁾ 셋째, 귀금속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반출이 가능하나, 입국 시 반입된 귀금속은 세관 신고 범위 내에서 반출이 가능하다(외화관리법 제26조). 예외적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 현금 · 외화 유가증권의 반출이 자유롭다.

외국 투자가의 기업 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금은 세금없이 전부 송금하거나 자기 자본을 제한없이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화관리법 시행규정에서 북한 내에서 경제 활동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북한원은 지정된 항목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20조), 앞의 내

용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임금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만 반출이 가능하다(외화관리법 제28조).

제재

외화 관리 질서를 어겼을 경우 몰수나 벌금 등 각종 재물을 가할 수 있다. 또한 벌금과 몰수금 지불을 거절하거나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계좌에서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

환율제도

북한은 계획 기관의 외환 수급 계획에 따

<표 6> 외화 사법에 대한 제재

유형	제재 조치
· 비승인 업종의 외국환 업무를 한 경우	이로부터 얻은 영업 수익금의 몰수 또는 5,000 원까지의 벌금
· 외화 결제 · 외화 대부 · 외화 양도 질서를 어긴 경우	결제(대부 · 양도)한 외화와 거래한 물자의 몰수 또는 2,000 원까지의 벌금
· 국가 지정 질서밖에서 외화 현금으로 물자를 거래한 경우	밀매 금액 몰수
· 불법적으로 타국에 있는 은행에 외화를 보관한 경우	10 일내 몰수 및 해당 보관액의 50%까지의 벌금
· 외화 관리 질서를 어겨 국가에 외화적 손실을 가한 경우	해당 손해를 외화로 보상 및 손해액의 50%까지의 벌금

자료: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57~58조.

5) 단,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외화 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반출이 가능하다.

〈표 7〉 북한원화 환율

	미국	일본	유로
단위	1 달러당	1 엔당	1 유로당
전신환 매입	2.1600	0.0189	2.5034
전신환 매도	2.1816	0.0181	2.5285

자료: 조선무역은행 1999년 1월 19일 기준.

라 환율을 임의로 결정하는 일종의 고정환율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사용 목적에 따라 상이한 환율을 적용하는 이중환율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적용하고 있는 환율의 종류에는 공정 환율, 무역 환율, 비상업 환율 등이 있다. 공정 환율은 기본 환율로서 외환 당국이 러시아 루블화의 對서방국 통화에 대한 공정 환율을 기초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구체적 결정 근거는 불명확하다.

무역 환율은 무역 및 무역외 거래 등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동질의 교역 상품을 선택하여, 이를 상품의 북한과 상대국에서의 도매 가격을 총체적으로 비교하여 결정되며, 무역은행이 수시로 발표한다.⁶⁾ 한편, 비상업 환율은 이론상 일정 기간 가계가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의 집합에 대한 화폐 지출을 비교하여 결정하지만, 실제로는 무역 환율에 일정한 지수를 가산하여 결정된다. 주로 무역외 거래·자본 거래에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무

역 환율로 통합되는 추세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합영법 시행 규정에서 환율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제39조에서는 외화로 출자하는 경우 지불 당일에 무역은행이 발표한 환율에 따라 북한원으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97조에서는 경영 계산에서 외화에 대한 북한원의 환산은 해당 시기 무역은행이 정한 외화 교환 및 결제 시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활동 중의 환율 계산은 무역은행이 발표하는 무역 환율이라고 유추해볼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규정된 상태는 아니다.

문제점

먼저 금융 조달에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북한 내에서 필요한 외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만성적 외

6) 경제무역지대에서는 북한원과 중국 인민폐가 1 위안당 24 원, 미국 달러가 1 달러당 220 원으로 교환된다.

환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 외화 사용 및 반출에 대해 엄격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는 북한 내에서 필요한 외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투자 대상국인 중국·베트남의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외화수지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대상국 내에서 외화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중국·베트남에 비해 열악한 투자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화 관리 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외화 관리 상의 규정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외화관리법 시행규정의 외화의 이용 규정 제16조와 20조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제16조에서는 경제 거래에 따르는 자금 결제 가운데 북한 원 계좌에는 북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북한원을 입금하며, 이 계좌에 있는 돈은 외화로 전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반면, 제20조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북한원 계좌에 북한 내에서 경제 활동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북한원을 입금하며, 이 북한원은 지정된 항목에만 쓸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제16조의 조항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불명확하다. 결국 북한 내에서 얻은 북한원은 외화

로 전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외화 부족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내수 판매보다는 수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출 부진시 외화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많은 외화를 북한측에 투입해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둘째, 북한의 외화 규제가 심하다는 점이다. 외화 집중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인 외화 현금의 유통 금지, 외화 거래, 저금, 예금, 저당 등의 외국환 관련 거래 은행의 제한, 외화 관리 기관의 결제 통화 지정 등은 외국인 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외화의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화 수급에 관한 각종 보고 의무 역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셋째, 외국인 투자 기업에 불리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금 결제를 위해 개설된 계좌의 잔고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그리고 제재 규정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른 규정에 비해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제57조와 제61조의 이밖의 외화 관리 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제재는 유사 위반 행위에 따른다는 규정과, 외화관리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북한 당국의 지나친 자의적 해석을 야기할 수 있다.

외국인 종업원은 외화 관리 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임금 등 합법적 소득의 60%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불리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은 종업원의 합법적 소득과 같은 외국인의 재산권에까지 제약을 가한다는 점에서, 송금 제한 규정의 철폐가 요청된다.

넷째, 환율에 대해서도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외국인 투자 관련 법에서는 환율의 유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앞서 본대로 북한의 환율은 크게 공정 환율·무역 환율·비상업 환율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외환 규정에서는 무역은행이 발표한 환율에 따라 북한원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 대략 무역 환율로 추정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북한의 외화 관리 기관이 임의로 환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의 환율이 갑작스럽게 변동할 수 있다.⁷⁾ 따라서 현재는 북한의 무역 환율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북한의 개방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떤 폭으로 환율 변화가 일어날지는 불확실하

다. 그리고 대미 달러 표시 환율은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제 외환 시장에서 美달러화 가치가 변동할 경우 엔화·유로화 등 달러화 이외의 외화에 대한 환율이 변동하게 되어 비달러 표시 국제 거래시 환위험이 존재한다.

현재 북한의 무역 환율은 실제보다 과대 평가되어 있어, 북한의 경제 상황과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불이익 및 그 영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다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

7) 중국의 경우 1993년 1 달러당 5.80 위안에서 1994년 8.45 위안으로 큰 폭의 평가 절하가 이루어졌다.